창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칙

제정 2013.04.22.

개정 2018.12.01.

소관부서 : 산학협력단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창신대학교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 이라 한다) 정관 제7조와 제9조의 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 하부조직과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련업무의 처리) 업무가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할 부서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업무

제3조(단장) ①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 〈개정 2018.12.01.〉

제4조(부단장) ①단장밑에 부단장 1인을 둘 수 있다.

②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 〈개정 2018.12.01.〉

제5조(하부조직) ①산학협력단은 정관 제7조에 따라 하부조직으로 연구사업단, 학교기업,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. 〈개정 2018.12.01.〉

②각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〈개정 2018.12.01.〉

제6조(업무) ①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〈개정 2018.12.01.〉

- 1. 산학협력 업무 총괄·조정
- 2. 산학협력단의 실적·성과의 평가

- 3. 운영위원회 운영
- 4.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
- 5.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
- 6. 산학협력 계약학과에 대한 지원사업
- 7.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에 관한 업무
- 8.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
- 9. 산학협력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
- 10.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
- 11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
- 12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- 13.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
- 14.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상호협력활동 및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
- 15. 대학의 교지 및 산업기술단지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
- 16. 가족회사(family doctor) 운영에 관한 업무<신설 2018.12.01.>
- 17. 학교기업운영에 관한 업무<신설 2018.12.01.
- 18. 부설연구소의운영에 관한 업무<신설 2018.12.01.>
- 19. 기타 위의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- ② 제1항 각호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신설 2018.12.01.>

제7조〈삭제 2018.12.01.〉

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8조(구성) ①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<개정 2018.12.01.〉
 - ②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③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
- 2. 산학협력단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- 4. 시행을 위한 세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0조(결의) 2/3이상의 참석의 과반수 이상 조건으로 결의한다.〈신설 2018.12.01.〉 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- 제12조(의사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3조(위원회의 소집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1. (제정일) 본 규칙은 2013년 4월 22일 제정한다.
- 2. (시행특례) 본 규칙은 1항의 제정일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년 3월 4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 <2018.12.01.>

1.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